

1. 개정 이유

조광료 체계 개편 및 조광료 연기·분할 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용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광료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 절차 개정(안 제11조제1항제1~2호 개정, 제11조제2항 신설)

- 1) 제목 “판매가격의 범위”를 “조광료의 산정”으로 변경
- 2) 판매가격을 정의하고, 이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추가
- 3) 총비용 산정기준 등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함

나. 조광료 산정 및 납부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1)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총매출액 및 총비용 자료 제출 기한 규정
- 2) 해저조광권자의 조광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다. 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를 위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1) 납부연기 기간을 규정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함

2) 납부연기 기간 연장 및 납부연기·분할납부 결정 취소 절차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10. 4. ~ 1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판매가액의 범위)”를 “(조광료의 산정)”으로하고,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를”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에서 유정 또는 가스정으로부터 판매지점에 이르기까지에 조광권자가 부담한 가공·저장·수송비용 및 기타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를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조광권자”를 “해저조광권자”로 하고, “천연가스를 판매한 경우의 판매가액은 당해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그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에서 제1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의 가중평균치로 한다.”를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고,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당해 해저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그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

나. 해당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조에 따른 총비용의 산정기준 등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매출액 및 총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 받은 후 해저조광권자에게 조광료를 산정하여 통보하며, 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해저조광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조광료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3(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9조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기간은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로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9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 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연기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간은 납부연기 기한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하며, 총 연장 기간은 24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영 제9조 제4항에 따라 납부연기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연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연기·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조광권자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납부연기·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판매가액의 범위)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제11조(조광료의 산정)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에서 유정 또는 가스정으로부터 판매지점에 이르기까지에 조광권자가 부담한 가공·저장·수송비용 및 기타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1.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
2. 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판매한 경우의 판매가액은 당해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그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에서 제1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의 가중평균치로 한다.	2. 해저조광권자인 ----- ----- ----- ----- ----- 천연가스를 판매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가. 당해 해저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

신설

신설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그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
나. 해당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② 영 제8조에 따른 총비용의 산정기준 등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매출액 및 총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 받은 후 해저조광권자에게 조광료를 산정하여 통보하며, 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해저조광권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조광료를 확정하여 통보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3(조광료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① 영 제9조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기간은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9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 기한까

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연기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납부연기 기한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총 연장 기간은 24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영 제9조 제4항에 따라 납부연기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연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연기·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 받은 조광권자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납부연기·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241